국회에서 의결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7년 12월 12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법무부장관 박 상 기

◉법률 제15157호

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

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금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”으로, “한정치산자”를 “피한정후견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,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「민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 ‘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’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‘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